

18. 農漁村發展 特別措置法 施行令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農林部 公告 第1996-91號 1996. 11. 28

주요 내용

- 가.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(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.) 개발사업의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함.
※동사항은 농지법시행령중개정령(안) 입법예고(농림부공고 제1996-72호, '96. 10. 26.)시 이미 공고된 내용임.
- 나. 개발제한구역 등 준농어촌지역에서 시행되는 농로 및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함.

개정 이유

「경쟁력 10%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」의 일환으로 기업의 공장용지 부담완화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, 「개발제한구역 주민부담경감 및 지원」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농로 및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 지원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.

주택회보